

양곡가공업

[] 제분업용

[] 제조업용

신고서

※ 뒤쪽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14일	
신고인	성명		생년월일		
	주소		전화번호		
설치공장	업체명				
	소재지		① 업체 구분		
	② 업종		부지면적 m ²		
③가공능력 (M/T) (1일24시간기준)		제분		제조	
	제품				
	원료				
건물		④건물구조	동수	면적(m ²)	보관능력(M/T)
	공장				
	창고				

「양곡관리법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도지사

시장·군수·구청장

귀하

첨부서류	1.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(「양곡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3호 서식) 1부. 2. 원료처리 및 제품생산능력표(제조업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1부.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근거 법령

- 「양곡관리법」 제19조 (양곡가공업의 신고)
-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유의사항

- 「양곡관리법」 제19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. (「양곡관리법」 제34조 제2호)

작성방법

1. ①란은 업체의 규모나 사업의 내용에 따라 제분업, 제조업 등으로 적습니다.
2. ②란은 신고하려는 업종(제분·제조)을 적습니다.
3. ③란은 1일 24시간을 기준으로 적으며, 제분업 중 밀가루 제분업은 제품생산능력을, 제분업 중 옥분 및 옥전분 제분업과 제조업은 원료처리 능력을 적습니다.
4. ④란은 공장 또는 창고의 건물구조(철골조스레트, 시멘트 바닥 등)를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